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. 3. 12 선고 2019가단77626 판결 [보증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3. D

4. E

피고 2, 3, 4의 소송대리인 F

5. F

변론 종결2020. 1. 16.

판결 선고2020. 3. 12.

주 문

- 가.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2. 5.부터 2019. 7. 31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나. 피고 C, D, E, F은 피상속인 망 G(H생)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금원 중 각 37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2. 5.부터 피고 C은 2019. 10. 8.까지, 피고 D, E, F은 각 2019. 10. 15.까지는 연 6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-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2. 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5. 12. 3. 주식회사 I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펜스공사 공동이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.

제2조(과업수행)

① 을(소외 회사)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USAFK(주한미군)와 갑(원고)에게 계약서상의 "하기"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완료하도록 책임지고 처리한다.

제3조(과업체결의 대가와 반납조건)

- ① 갑은 을에게 헨스공사 계약성공사례금 1억 5천만 원을 계약시 지급한다.
- ② 제2조①항의 도급계약 미체결시 을은 갑에게 계약성공사례금 1억 5천만 원을 즉시 반납한다.

제8조(연대보증)

① 본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특약사항의 내용을 계약보증인 병(피고 주식회사 B, 망 G)은 보증하며 을의 계약불이행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며 이에 보증한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1억 5천만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으나, 소외 회사는 이

사건 계약에서 정한 2016. 2. 3.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.

다. G은 2019. 3. 9. 사망하였고, G의 자녀들인 피고 C, D, E, F이 각 1/4 지분에 관하여 G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2019. 12. 23.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있었다(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노단10076)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을제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- 1)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.
- 2) 일부기각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이행기는 2016. 2. 3.이므로 성공사례금의 반환의무는 2016. 2. 4. 발생하여 이행기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바, 위 성공사례금 상당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이행기 다음날인 2016. 2. 5.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.
-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. 6. 1. 시행된 것)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,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(2019. 8. 23.)부터 연 12%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.

나. 피고 C, D, E,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망 G이 이 사건 계약을 연대보증한 사실 및 위 피고들이 이를 상속한 후 모두 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따라서 위 피고들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상속인 망 G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37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2. 5.부터 피고 C은 2019. 10. 8.까지, 피고 D, E, F은 2019. 10. 15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의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현진